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 심사 서류제출 안내

(데이터자격검정센터)

□ 유의사항

- (유효기간)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단, 학위기, 졸업장과 같이 수여받은 증서는 유효기간에 제한 없음)
- (제출기한) 모든 서류는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해야 함
- (제출범위) **해당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서류**만 제출
(예: 응시자격 1은 학력관련 서류만, 응시자격 4는 자격취득 관련 서류만)
- (심사기준일) 제4회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시험일까지 취득된 것만 인정**
- (심사결과) **응시자격 서류를 미제출, 불완전제출, 허위 기재하거나, 응시자격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기합격예정자격 취소**
- (결과통보) 심사결과는 휴대폰으로 개별 발송(카카오톡 또는 SMS)하며, 결과 통보를 위해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www.dataq.or.kr)의 등록 연락처 확인 요망**

□ 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전공 무관)
2.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전공, 직무분야 무관)
3.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전공, 직무분야 무관)
4.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종목 무관)
5.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종목 무관)
6.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종목, 직무분야 무관)
7.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2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종목, 직무분야 무관)
8.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종목, 직무분야 무관)
9. 4년 이상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무관)

※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비고

1.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에 해당
2. "졸업예정자"란 필기시험일 기준으로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3. 최종 학년이 아닌 경우,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에 해당
(이때 대학 재학으로 취득한 학점 이외의 자격증 취득, 학점은행제 등 기타의 방식으로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
4.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에 해당
5.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6.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7.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및 3(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득 및 졸업일 이후 직장경력만 인정

□ **제출기한 : 합격예정자 발표 차주 월요일~금요일 일과시간휴일 등으로 변동가능**

- 제출기간 동안에는 서류 보완이 가능하나, 기한이 지나면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완·추가할 수 없음
- 제5회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시험 **예시**

필기시험 합격자에 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증빙 서류제출	자격심사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실기시험 원서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2. 10. 21	22. 10. 24. 10:00 22. 11. 3. 18:00	22. 10. 24 22. 11. 4	22. 11. 7 22. 11. 11	22. 12. 3	22. 12. 23

- 제출서류를 근거로 응시자격을 심사한 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며, 결과는 휴대폰으로 개별 발송(카카오톡 또는 SMS)
- 결과통보를 위해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www.dataq.or.kr\)](http://www.dataq.or.kr) 등록 **연락처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응시자격**은 필기시험일까지 취득된 것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 서류는 **증빙하고자 하는 응시자격에 관한 것만 제출***
 - * 예) 응시자격 1은 학력 관련 서류만, 응시자격 4는 기사 등급 이상 자격 서류만 제출

○ **학력관련 제출서류**

* **증명서류 온라인 제출은 전문업체를 통한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부학교는 지원되지 않음

졸업자	증명서류
대학	·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학위취득일자 포함) 中 1부
전문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재(휴)학증명서, 재(제)적증명서 中 1부
졸업예정자, 최종학년재학	· (4년제) 106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1부 · (3년제) 8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1부 · (2년제) 4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1부 (일반 정규대학/전문대학 재학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필수, 현재 일반 정규대학/전문대학 재학중인 자는 해당없음)

【주의사항】

- 재(휴)학, 재(제)적증명서 : 반드시 최종학년 이상 또는 조기졸업이 표시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미등록 또는 학년표기가 없는 경우 불인정
- (예1 : 4년제 대학 재학중 3학년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 (예2 : 2년제 대학 재학중 1학년으로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불인정)

○ 경력관련 제출서류

구분		4대보험 가입자	4대보험 미가입자
일반 사업장	자영업자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피고용인	·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특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 동일직업에 종사자(사업주 제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폐업한 사업장	자영업자	· 경력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사업주가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특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각 1부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직업에 종사자(사업주 제외)의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사업주가 없는 경우	·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특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 · 동일직업에 종사자(사업주 제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 경력증명서 1부 + · 동일직업에 종사자(사업주 제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프리랜서, 계약직	자영업자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사업주가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특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1부 (계약서가 없는 경우 동일직업에 종사자(사업주 제외)의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사업주가 없는 경우	·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각 1부 ※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건강보험특실확인서 등으로 재직기간 전체가 확인되어야 함 + · 동일직업에 종사자(사업주 제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 경력증명서 1부 + · 동일직업에 종사자(사업주 제외)의 사실확인서 1부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필요
군경력자	사병, 장교, 부사관	·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표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공양식(첨부 2) 작성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사업주 날인이 필요하며,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 사실확인서(첨부 3) 제출)
-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은 각각 발급 또는 작성
- 경력사항 진위에 관하여 별도 확인할 수 있음

※ 사실확인서 : 제공양식(첨부 3) 사용

○ 해외학력(경력 포함) 관련 제출서류

대상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 (중국 등)
외국학력취득자 (졸업, 재학, 이수증명서 등)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장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 · 아포스티유 공증서류 1부 + · 번역 공증서류 1부 ※ (국공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아포스티유 증명서를 국내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해당국가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국내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 학력 인증보고서 번역본 1부 ※ 업무대행처를 통한 발급서류 인정
외국 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등)	· 경력증명서 ※ 해당국가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국내 번역, 공증 후 제출	· 경력증명서 ※ 해외공관장 또는 국내대사관의 확인을 받은 후 번역 및 공증 후 제출

【주의사항】

- 졸업학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학위명, 전공명, 이수기간 등) 명시 필요
- 학년 확인이 어려운 성적증명서만으로는 불인정
- ※ 제출서류 준비에 긴 시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학력(경력)서류 제출 연기 신청서”(첨부 1)를 제출하여 서류를 자격심사를 연기할 수 있으나 당회차 실기시험 응시 불가
- ※ 유효기간에 제한없음

□ 제출방법

- 데이터자격검정사이트(www.dataq.or.kr⇒마이페이지⇒시험결과⇒증빙자료)에 응시자격 별로 별도 항목에 각각 나누어서 업로드

학력관련 항목	경력관련 항목	자격관련 항목	기타 항목
- 졸업증명서 - 학위증 - 학위취득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재(휴)학증명서 - 재(제)적증명서 - 학점인증증명서 - 기타	- 경력증명서 - 4대보험가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확인서 - 계약서 사본 - 자격표 - 기타	- 관련 자격증	- 외국학력(경력) 서류 제출 연기신청서

【주의사항】

- 업로드 관련 세부사항(각 항목당)

파일수	용량	형식
1개	1MB	pdf, gif, jpg, jpeg, png, bmp, zip, rar

- 하나의 항목에 여러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출 파일을 모아 압축(zip, rar)하여 1개의 파일만 업로드해야 하며, 압축파일의 업로드 가능 용량도 1MB이므로 파일 크기 조절에 유의
- 제출서류 등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여 업로드 할 수 있으나 기재내용과 직인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오제출, 압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불완전제출에 해당하여 필기합격예정자격을 취소되므로 업로드 후 반드시 확인 요망

□ 관련문의 : 1877-9817